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86
----------	-------

발의연월일 : 2025. 7. 18.

발 의 자 : 윤재옥 · 김태호 · 김상훈
김선교 · 조지연 · 이인선
서천호 · 권성동 · 백종현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개발·중개·평가 등 부동산서비스와 세무·회계·등기 등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하는 인증제도를 두고,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증 대상을 서비스 간 연계 사업자로 한정함에 따라 프롭테크 등 IT 기반의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인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인증제는 기간(2년) 도과 시 재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규제의 성격이 있어 이를 ‘선정’으로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제도를 선정제도로 변경하고, 서비스 간 연계 여부와 관련 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서비

스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과 소비자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각각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은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를 “선정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 하여 제공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로, “인증 주체”를 “선정 주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 받은”을 “선정 된”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를 “선정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인증기준”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을 각각 “선정”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인증취소”를 “선정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1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을 각각 “선정”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선정심사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각각 “선정”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인증”을 각각 “선정”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선정서와 선정마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인증”을 각각 “선정”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인증”을 각각 “선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인증”을 “선정”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인증취소”를 “선정취소”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을 각각 “선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인증마크”를 “선정마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서비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우수서비스사업자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 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 자(이하 “우수서비스사업자”라 고 한다)를 <u>인증</u> 할 수 있다.	제15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u>선정</u>) ① ----- ----- ----- ----- ----- <u>선정</u> -----.
② 제1항에 따른 <u>인증은</u> <u>부동 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 여 제공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 자를 대상으로</u> 시행하며, <u>인증 주체와 대상 등에 관하여 구체 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u>	② ----- <u>선정은</u> <u>창의 적이고 혁신적인 부동산서비스 를 제공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 자(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 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부동산서비 스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대상 으로</u> ----- <u>선정 주체</u>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u>인증을 받은</u> 우수서비스 사업자(이하 “ <u>인증 우수서비스 사업자</u> ”라 한다)가 제5항에 따 른 <u>인증기준</u> 등을 유지하는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③ ----- ----- <u>선정된</u> ----- ----- <u>선정</u> <u>우수서비스사업 자</u> ----- <u>선정기준</u> ----- -----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 절차 · 방법 · 점검 및 인증표
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서
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3. (생 략)

4.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
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가 다
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
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부동산서비스사업자는 우수

-----.

④ (현행과 같음)

⑤ -----선정-----

-----선정-----

-----.

제16조(우수서비스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 ① -----

-----선정-----

-----.

-----선정-----

-----.

-----.

1. -----

선정-----

2. 3. (현행과 같음)

4. -----선정-----

5. 선정-----

-----선정-----

② -----

서비스사업자 <u>인증</u> 이 취소된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른 <u>인증</u> 서를 반납하고 <u>인증마크</u> 의 사 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u>선정</u> ----- ----- <u>선정</u> ----- ----- <u>선정</u> ----- -----.
제17조(<u>인증심사대행기관</u>)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우수서비스사 업자 <u>인증</u> 과 관련하여 <u>인증심</u> 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 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u>인</u> <u>증</u> 심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u>선정심사대행기관</u>) ① --- ----- ----- <u>선정</u> ----- <u>선정</u> --- ----- ----- <u>선</u> <u>정</u>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 -----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u>인증</u> 업무 를 거부한 경우	3. ----- <u>선정</u> ----- -----
4. <u>인증</u>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 여 <u>인증</u>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u>선정</u> ----- --- <u>선정</u>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9조(<u>인증서와 인증마크</u>) ① 국	제19조(<u>선정서와 선정마크</u>) ① --

토교통부장관은 <u>인증</u> 우수서비스사업자에게 <u>인증서</u>를 교부하고, <u>인증</u>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u>인증마크</u>”라 한다)를 제정하여 <u>인증</u> 우수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u>선정</u>----- -----<u>선정</u>----- ---<u>선정</u>----- ---<u>선정</u>----- -----<u>선정</u>----- -----.
② <u>인증마크</u>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u>선정</u>----- ----- -----.
③ 거짓으로 <u>인증마크</u>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u>인증</u>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③ -----<u>선정</u>----- ----- <u>선정</u>----- -----.
제20조(<u>인증</u>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u>인증</u>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u>선정</u>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 -----<u>선정</u>----- ----- -----.
제24조(수수료) ① 제15조에 따라 우수서비스사업자 <u>인증</u>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 ① ----- -----<u>선정</u>----- ----- -----.
② (생략) 제2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청문) -----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우수서비스사업자의 <u>인증취소</u> 2. (생략) 제28조(벌칙) ①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u>인증마크</u>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u>인증</u>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u>인증서</u>를 대여한 <u>인증</u> 우수서비스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u>인증마크</u>를 계속 사용한 자 ② (생략)	----- -----. 1. ----- -----<u>선정취소</u> 2.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① ----- -----<u>선정</u>----- ----- -----<u>선정</u>----- ----- -----. ② ----- ----- ----- -----<u>선정</u>-----<u>선정</u>----- ----- -----. 제30조(과태료)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선정마크</u>----- ② (현행과 같음)
--	---